

의안번호	2219790
의 퇴 인	최수진의원
회 답 일	2026.8.27.
추계번호	26D334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선거일의 투표용지를 직전 선거의 투표율에 연동한 최소 수량 기준에 따라 인쇄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9억 2,200만원, 2032년 9억 9,2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65억 7,400만원(연평균 13억 1,500만원)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전·지선)	2031	2032 (국선)	합계	연평균
투표용지 인쇄율 상향 (안 제151조제1항)	922	-	4,660	-	992	6,574	1,315

주: 1. 투표용지 인쇄율 상향(안 제151조제1항)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
2.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 인쇄율을 직전 3회 동종선거의 최고투표율에 15%p를 더한 비율로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1조제1항 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	선거일의 투표용지는 직전 3회 동종선거의 최고투표율에 15%p를 더한 비율과 직전 동종선거의 전국 투표율에 10%p를 더한 비율 중 높은 비율 이상, 선거인 수 이하의 범위에서 인쇄하도록 함	의무규정
2	안 제151조제2항 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	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투표용지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개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	의무규정
3	안 제151조제7항 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	투표용지의 위조·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	의무규정
4	안 제151조제9항·제10항 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	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마다 소속 직원 중 투표용지관리관 1명을 지정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51조 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	○	-
2	안 제151조제2항 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	-	가이드라인 수립·공개 및 국회 보고는 기존 인력과 자원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
3	안 제151조제7항 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	X	기술적 보호조치의 방식, 종류,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4	안 제151조제9항·제10항 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	-	투표용지관리관은 기존 인력 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선거일의 투표용지를 직전 선거의 투표율에 연동한 최소 수량 이상으로 인쇄하도록 의무화하여 현행 절차사무편람 또는 인쇄실적 대비 인쇄매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재정소요 발생
 -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「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」은 선거인 수 대비 인쇄율을 국회의원·대통령선거 60%, 지방선거 50%를 기준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음
 -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「진상규명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」(2026.6.19.)에 따르면,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60%였으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인쇄비율을 50% 적용한 것으로 확인
- 본 추계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인쇄율을 절차사무편람의 하한선(국회의원·대통령선거 60%, 지방선거 50%)으로 보고, 개정안에 따른 인쇄율은 직전 3회 동종선거의 최고투표율에 15%p를 더한 비율과 직전 동종선

거의 전국 투표율에 10%p¹⁾를 더한 비율 중 높은 값(국회의원선거 82%, 대통령선거 94.4%, 지방선거 76%)으로 가정

- 직전 동종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국회의원선거 67.0%, 대통령선거 79.4%, 지방선거 61.0%(제9회, 잠정)로 직전 3회 최고투표율과 동일
-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작성·교부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인쇄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추계에 서 제외함

□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시 선거일의 투표용지 인쇄매수가 증가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며 보궐선거는 제외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⁾

□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과 법률안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선거일의 투표용지 인쇄율이 현행 하한기준(60% 또는 50%)에서 투표율에 연동한 기준(국회의원선거 82%, 대통령선거 94.4%, 지방선거 76%)으로 상향됨에 따라 증가하는 인쇄 비용

□ 본 추계에서는 선거인 수, 선거인 1명당 투표용지 수량, 개정안에 따른 인쇄율 증분, 투표용지 인쇄단가를 곱하여 산출

- (선거인 수) 공직선거가 있는 해인 2028년 45,528,657명, 2030년 45,819,545명, 2032년 46,012,371명

1) 각 선거의 직전 3회 최고투표율은 국회의원선거 67.0%, 대통령선거 79.4%, 지방선거 61.0%(제9회, 잠정)이며, 모든 선거에서 최고투표율에 15%p를 더한 비율이 직전 투표율에 10%p를 더한 비율보다 높음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6.3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3%	2.1%	2.3%	2.0%	2.0%	2.0%

-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(2022~2072, 2023년 12월 발표)에 근거하여 18세 이상 인구 수를 합한 값
- **(선거인 1명당 투표용지)** 2028년 및 2032년 국회의원선거 각 2매, 2030년 대통령선거 1매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7매
- **(인쇄율 증분)** 2028년 및 2032년 국회의원선거 22%p(=82%-60%), 2030년 대통령선거 34.4%p(=94.4%-60%), 전국동시지방선거 26%p(=76%-50%)
 -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「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」은 선거인 수 대비 인쇄율을 국회의원·대통령선거 60%, 지방선거 50%³⁾를 기준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음
- **(인쇄단가)**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단가 42원은 202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추정하였고,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
[표 2] 투표용지 인쇄단가 추정: 2028~2032년

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선·지선)	2031	2032 (국선)
투표용지 인쇄단가	46	47	47	48	4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, 「진상규명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」(2026.6.19.) 참조.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지방선거에도 60%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제9회부터 50%로 인하함

- 추계결과, 선거일의 투표용지를 직전 선거의 투표율에 연동한 최소 수량 기준에 따라 인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9억 2,200만원, 2032년 9억 9,2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65억 7,4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투표용지 인쇄율 상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: 2028~2032년

구분	2028 (국선)	2029	2030		2031	2032 (국선)	합계
			대선	지선			
선거인 수(a, 명)	45,528,657	—	45,819,545		—	46,012,371	—
선거인 1명당 투표용지(b, 매)	2	—	1	7	—	2	—
인쇄율 증분(c)	22%p	—	34.4%p	26%p	—	22%p	—
투표용지 인쇄단가(d, 원)	46	—	47		—	49	—
추가재정소요 (=a×b×c×d, 백만원)	922	—	741	3,919	—	992	6,57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상 현행 인쇄 하한기준과 최근 공직선거의 투표용지 인쇄 관련 예산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